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 엄태영·신성범·서천호

이종배 • 박충권 • 최형두

주진우 · 김상훈 · 김장겸

김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%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(최대 55%)에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,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%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			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		
1억원 초과	1월마이 : (1여이의 추가하는 그래이 100분이 20)			
30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		
30억원 초과	5억9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 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		제26조(상속세 세율)			
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					
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					
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					
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					
<u><과세표</u> <u>준></u>	<세 율>		<u><과세표</u> <u>준></u>	<세 율>	
<u>1억원</u> <u>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u>		<u>1억원</u> <u>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u>	
<u>1억원</u> 초과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		<u>1억원</u> 초과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	
<u>5억원</u>	금액의 100분의 20)		<u>30억원</u>	금액의 100분의 20 <u>)</u>	
<u>이하</u> 5억원			<u>이하</u> 30억원	5억9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	
<u> </u>			<u>50 기원</u> 초과	금액의 100분의 30)	
10억원					
<u>이하</u>					
10억원					
<u>초과</u>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				
30억원	<u>금액의 100분의 40)</u>				
<u>이하</u>					
30억원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				
<u> </u>					